심 사 보 고 서

【서산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996. 10. 4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96. 9. 10

나.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다. 회부일자 : 1996. 9. 23

라. 상정일자 : 1996. 10. 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과장 한기택)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종전에는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호적법에 규정된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시읍.면의장이 정하도록되어 있었지만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정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의2 및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던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 조례를,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5항의 삭제 ('95.12.26)와 동시행규칙 52조 6항의 개정('95.6.5)된 규정이 정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95.12.26)등에 따라 호적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 현재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서산시 호적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 안 번 호	제 94호
의결 년월일	1996. . . (제 회)

서산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9.10.

서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96

제출년월일 : '96. 9. 10.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하여 시·읍·면의장이 정하도록되어 있었지만,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정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함

□ 참고사항 (관련법령발췌)

호적법제132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